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673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67347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5 선고 2018가단462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 피항소인 F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석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민

변론 종결 2020. 6. 25.

판결 선고 2020. 7. 23.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5. 선고 2018가단462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0,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1),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하는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1.경 뇌경색으로 쓰러지기까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H조합의 직원2) 인 피고와 아래에서 인정되는 금전거래(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 수많은 금전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 총 합계 187,070,520원

1) 망인의 공제금 합계 65,070,520원(별지 표 순번 2, 3참조)

① 2007. 4. 16.자 공제금 30,012,070원3) (이하 '제1공제금 30,000,000원'이라 한다)

② 2008. 7. 9.자 공제금 35,058,450원(= 19,403,080원4) + 15,655,370원5) , 이하 '제2공제금

35,000,000원'이라 한다)

2) 원고 C 운영 M 호프집6)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 합계 122,000,000원(이하 'M 호프집 정리자금'이라 한다)

① 2008. 7. 25.자 신규 임차인 N으로부터 받은 가계약금 5,000,000원7) ② 2008. 8. 11.자 위 N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권리금 82,000,000원

③ 2008. 8. 13.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나. 피고가 망인의 요청으로 원고 C 운영 M 호프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총 합계 85,000,000원(이하 순차로 '제1, 2대출'이라 한다)

1) 2007. 5. 30.자 피고 명의 대출금 50,000,000원8) 2) 2007. 6. 1.자 피고 명의 대출금 35,000,000원(제2공제금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2) 피고는 M 호프집 정리자금 122,000,000원의 사용처를 정리해 두기 위하여 원고 C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P)에 전산상으로 아래와 같이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원고 C 명의의 H조합 다른 계좌(계좌번호 Q)에 2008. 8. 12.자로 위 돈 중 12,991,500원(아래 H조합 38번 관련)을 입금처리 하였다(갑다 제19, 30, 34호증).

[거래내역 표]

DOCUMENT: H조합 계좌 거래내역 표(이미지 생략)

3)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2430호(원고 D이 피고를 상대로 제1공제금의 횡령 내지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한 사건, 갑다 제28호증의 1)

○ 망인은 피고가 원고 C에게 M 호프집 관련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하면 원고 C이 돈을 갚을 것이라고 하며 망인의 제1공제금 3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S)에 입금하여 두라고 하였다.

○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원고 C에게 제1공제금 30,000,000원 외에 55,000,000원을 더 빌려주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명의로 H조합로부터 제1, 2대출을 받아 원고 C에게 총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창원지방법검찰청 진주지청 2012형제17201호(원고 D이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갑다 제26, 27호증)9) ○ 제1공제금 : 망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곳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제2공제금 35,000,000원, 제1공제금 30,000,000원, 피고의 돈 20,000,000원을 M 호프집 관련하여 원고 C에게 송금하였다.

○ 제2공제금 : 망인의 제2공제금 35,000,000원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제2대출을 받아 원고 C에게 빌려주었고, 위 공제금이 만기가 되어 망인의 허락을 받고 망인의 위 공제금을 해지하여 피고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결과적으로 망인이 원고 C에게 돈을 준 모양새가 되어 횡령한 것이 없다.

4) 원고 C 등이 피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가) 창원지방법원 제1회 합의부 2015형제14546호(갑다 제15호증)

○ 제1공제금 :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다.

○ 제2공제금 : 피고는 원고 C에게 35,000,000원을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이므로 혐의 없다.

나) 창원지방법원 제1회 합의부 2018형제3439호(갑다 제19호증)

○ 피고가 M 호프집 관련하여 122,000,000원을 받아 제1, 2대출금 85,000,000원의 변제 등 정산을 거쳐 약 13,000,000원을 원고 C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가 원고 C에게 70,000,000원[= 위 거래내역 표 5,000,000원(H조합 37번) + 제1, 2공제금 상당 65,000,000원]을 더 반환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 횡령한 것이라고 고소하였으나, 위 거래내역 표 5,000,000원(H조합 37번)은 망인에게 지급되었고, 제1, 2공제금 상당 65,000,000원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민사상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 C에게 M 호프집 관련 85,000,000원을 대여하기 위해 같은 금액을 대출받고 위 호프집 정리자금 122,000,000원을 대신 받아 그 중 85,000,000원을 그 대출 변제에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7. 4. 16. 피고의 계좌로 '원고 C에 대한 M 호프집 관련 대여금' 용도로 제1공제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제1공제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1공제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는 그 후 제1공제금 30,000,000원을 자신의 대출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에 대한 망인의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가 망인의 요청으로 원고 C에게 빌려주어야 하는 돈 85,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제1, 2대출을 받아 이를 원고 C에게 지급하였고, 제2대출 당시 제2공제금이 H조합에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제2공제금이 2008. 7. 9. 피고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 스스로 제2공제금이 제2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입금된 것으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로 2008. 7. 9. H조합로부터 35,000,000원이 다시 대출되고, 위 대출금은 M 호프집 임대인이 2008. 8. 13.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변제되었는바(갑다 제21, 29호증), M 호프집 정리자금 122,000,000원 중 35,000,000원이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것이 망인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는 M 호프집 정리자금 122,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제1대출금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처리가 망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망인은 제1, 2공제금이 지급된 H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제1공제금의 경우 해당 공제계약의 관리인 겸 모집인이었고, 제2공제금의 경우 계약자 본인이었으며, 망인의 딸인 원고 C이 M 호프집을 운영하였으므로, 제1, 2공제금의 지급 내지 M 호프집 관련 권리금·임대차보증금의 지급사실을 그 당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금전거래는 2008. 8. 13.경 마무리되었는바, 망인이 2011. 11.경 쓰러질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정산을 구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금전거래 중 이 사건 금전거래 만을 구분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최진숙

판사호성호

판사김민정

별지

- 1) 2019.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 2) 1982. 9.경 H조합에 입사하여 2005년경부터 전무로 근무하였다.
- 3) 망인은 원고 D 명의로 공제계약에 가입하고 망인의 돈으로 해당 공제료를 납입하였다(공제번호 L).
- 4) 공제번호 J
- 5) 공제번호 K
- 6) 사업장 소재지 : 진주시 R(1층), 개업일 : 2007. 8. 20., 폐업일: 2008. 8. 10.(갑다 제35호증)
- 7) 갑다 제24호증
- 8) 갑다 제3호증
- 9) 망인의 질병으로 참고인중지되었다.